

이사회 회의록 (2014-1차)

(2014. 1. 20. 17:00-18:00)

학교법인 숭의학원

尹順姬	백경숙	전종자	박상학
임종희	강소자	김상례	김명우

이사회 회의록 (2014-1차)

회의소집 통보일자 : 2014. 1. 10	
이사정수 : 8인	제적이사 : 8인
감사정수 : 2인	제적감사 : 2인

1. 회의일시 : 2014. 1. 20(월) 17:00

2. 회의장소 : 법인회의실

3. 참석임원 : 이사(8인) 윤순희, 백성학, 정동화, 강순자, 남상학, 김상태,
원종학, 김명우

4. 불참임원 : 감사(2인) 안성용, 오용환

5. 회의안건 :

- 의안 제1호 : 2013학년도 법인회계 추가경정예산(안)
- 의안 제2호 : 2014학년도 법인회계 예산(안)
- 의안 제3호 : 승의학원 장학기금 규정(안)
- 의안 제4호 : 대학교 교원 인사

6. 회의내용

- 윤순희 이사장이 제적이사 8명 전원이 참석하였기에 성원이 되므로 개회를 선언하고, 기도에 이어 전회 회의록을 낭독하라고 하다.
- 이석우 사무국장이 2013-8차 이사회(2013.11.29) 회의록을 낭독하다.
- 강순자 이사가 전회 회의록을 그대로 받기로 하며 동의하자, 남상학 이사 제청에 이어 참석이사 전원 찬성하므로 전회 회의록은 그대로 받기로 하다.

윤순희	백성학	정동화	남상학
원종학	강순자	김상태	김명우

1. 의안 제1호 : 2013학년도 법인회계 추가경정예산(안)

- 윤순희 이사장이 의안 제1호 2013학년도 법인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부의 하다.
- 이석우 사무국장이 법인회계 2013학년도 추가경정예산이 기부금 및 기금인출 수입과 전년도 이월금의 증가와 예금이자수입의 감소 등 수입 증·감액 요인이 발생함에 따라 예산을 추가경정하여야 함을 설명하다.
- 김명옥 이사가 법인 추가경정예산을 사전 검토하였는데 별도로 관리, 운영 하던 장학금을 법인회계에 포함시켜 장학기금으로 적립, 지급하게 되어 기부금과 기금인출 수입이 증가되었으며, 정기예금 이율 하락으로 예금이자수입 감소 등을 감안하여 재정회계운영 지침에 맞추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였기에 원안대로 처리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며 동의하자, 김상태 이사 재청에 이어 참석이사 전원 찬성하다.
- 윤순희 이사장이 2013학년도 법인회계 추가경정예산은 당초예산 532,118,000원에서 수입·지출 공히 190,568,000원이 증가된 722,686,000원으로 가결 통과되었음을 선포하다.

2. 의안 제2호 : 2014학년도 법인회계 예산(안)

- 윤순희 이사장이 의안 제2호 2014학년도 법인회계 예산(안)을 부의하고, 이석우 사무국장이 2014학년도 법인회계 예산이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과 특례 규칙에 의거 법인 실정과 운영 목표에 맞추어 편성하였으며, 전년 대비 증·감 내역과 예산의 세부사항을 설명하다.

尹順희	裴成浩	정동하	李成浩
潤淳熙	강소자	김상태	김명옥

- 원종학 이사가 예산 세부사항을 검토한 바, 앞으로 예상되는 금리인하로 예금 이자수입을 낮추어 계상하였고, 인건비 상승과 직원 건강보험 법정부담금 인상으로 각학교 법정부담금전출을 증액하는 등 재정회계운영 지침에 맞추어 예산을 편성하였기에 원안대로 처리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며 동의하자, 백성학 이사 재청에 이어 참석이사 전원 찬성하다.
- 윤순희 이사장이 2014학년도 법인회계 예산은 수입.지출 총 554,716,000원으로 가결 통과되었음을 선포하다.

3. 의안 제3호 : 승의학원 장학기금 규정(안)

- 윤순희 이사장이 의안 제3호로 승의학원 장학기금 규정(안)을 부의하고, 이석우 사무국장이 1988년 7월 9일 이준 전이사장의 기부금 35,667,839원을 시작으로 별도 관리해오던 승의학원 장학금을 투명한 운영을 위해 2013학년도 법인 회계에 포함하여 임의장학기금으로 적립시켜 관리토록 하고, 정확한 장학금 지급 및 관리를 위하여 장학기금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을 설명하며 장학기금 규정(안)을 보고하다.
- 백성학 이사가 그동안 전이사장 및 박현숙 여사 유족 등의 기부금으로 만들어진 승의학원 장학금을 25년간 잘 운영해 왔지만, 신설하는 규정(안)은 기부금 목적에 맞게 장학금 지급 기준을 잘 갖추었으므로 원안대로 하는 것이 좋겠다고 동의하자, 정동화 이사 재청에 이어 참석이사 전원 찬성하다.
- 윤순희 이사장이 참석이사 전원 찬성으로 승의학원 장학기금 규정(안)은 <붙임> 승의학원 장학기금 규정대로 하는 것으로 가결 통과되었음을 선포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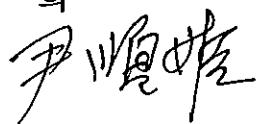
尹順희	백성학	정동화	박상학
윤순희	강순자	김상태	김명숙

4. 의안 제4호 : 대학교 교원 인사

- 윤순희 이사장이 의안 제4호 대학교 교원 인사를 부의하고, 이석우 사무국장이 대학교의 조교수 신규임용 등을 보고하다.
- 김명옥 이사가 대학교 조교수, 산학협력 조교수 신규임용은 공개채용 절차를 거쳐 법인에서 최종 면접을 하여 제청하였기에 원안대로 처리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며 동의하자, 김상태 이사 재청에 이어 참석이사 전원 찬성하다.
- 윤순희 이사장이 참석이사 전원 찬성으로 최동춘, 김성혜는 2014. 1.20부
승의여자대학교 조교수로 신규임용(임용기간 : 2014. 1.20 ~ 2015.12.31 -
계약제), 김희동은 2014. 1.20부 승의여자대학교 산학협력 조교수로 신규임용
(임용기간 : 2014. 1.20 ~ 2015.12.31 - 계약제)하는 것으로 가결 통과
되었음을 선포하고, 이사회 회의를 끝마친다. (폐회 18:00)

2014. 1. 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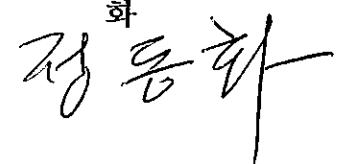
학교법인 승의학원 이사장 윤순희



이사백성학



이사정동화



尹順姬	백성학	정동화	승의학
윤순희	강순자	김상태	김명옥

이사강순자

이사남상학

이사김상태

이사원종학

이사김명옥

이사강순자	이사남상학	이사김상태	이사원종학
이사김명옥	이사강순자	이사김상태	이사원종학

<붙임>

승의학원 장학기금 규정

제 1 조(명 칭)

본 회는 승의학원 장학기금 위원회(이하“장학회”)라 한다.

제 2 조(목 적)

본 규정은 승의학원 장학회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하여 많은 학생들이 장학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제 3 조(기금조성 및 재원)

본 학원 관련 인사, 복지가, 산업체 및 각종 장학재단 등의 출연금을 재원을 한다.

제 4 조(기금관리운영)

1. 본 기금은 학교법인 승의학원 이사장이 관리한다.
2. 장학금은 기금의 이자 수입만으로 지급하고 출연 장학기금은 최대한 증가시켜 보유토록 한다.
3. 본 학교법인 이사장은 장학기금과 이자의 수입 및 장학금 지급 결과를 결산 심의시 승의학원 이사회에 보고하고 필요한 경우 출연자에게도 통보한다.

제 5 조(장학위원회 설치 및 구성)

장학생 선정 및 장학금 지급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장학기금 위원회를 두고 위원장은 이사장으로 하고 위원은 대학 총장과 초·중·고교 교장으로 구성한다.

제 6 조(지급대상)

1.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
2. 가정사정이 빈곤하여 학비조달이 어려운 자
3. 학원발전에 현격한 공로가 있는 자 및 학교의 명예를 높인 자

제 7 조(장학생의 추천)

학교별 교장 및 총장이 장학생을 추천토록 한다.

尹惟海	백성학	정동학	남상학
임종혁	강승자	김상태	김미숙

제 8 조(결 격)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자는 장학수혜 대상이 될 수 없다.

1. 교칙을 위반하여 징계를 받은 사실이 있는 자
2. 예배출석 미달자
3. 평소 품행이 단정하지 못한 자
4. 기타 부적격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 9 조(지급방법)

1. 5백만원 이상 출연자 중 희망하는 경우에는 출연자의 명의로 지급한다.
2. 5백만원 미만 출연자의 경우에는 “승의학원 장학금”명칭으로 지급한다.
3. 장학금 지급은 기금의 이자수입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제 10 조(기금운영 목적변경 제한)

본 기금의 출연목적에 동의하여 협조하여 주신 분들의 뜻을 존중하기 위하여 기금운영의 본래 목적을 변경 사용할 수 없다.

부 칙

-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尹順姬	백성희	김동화	나상길
金善泰	강소자	김상태	김미숙